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의 세탁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 범위의 구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1.)에 따른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의 정비,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세탁물의 수집·보관 기준, 운반차량 및 운반용기의 소독 방식, 처리업자의 운반차량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세탁물 범위에 진료행위에 관여하는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포함하고, 의료기관세탁물의 종류에 청결세탁물을 신설함(안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나. 감염병 분류체계를 개편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1.) 사항을 반영하여 세탁금지 세탁물에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을 포함하고, 제3급감염병인 황열과 뎅기열은 제외함(안 제5조)

다.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손위생, 개인보호구 착탈의, 세탁물 취급 주의사항 등을 포함(안 제8조)

- 라.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는 청결 영역과 분리하고,
청결세탁물은 오염영역과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함(안 별표1)
- 마. 운반차량 적재고와 운반용기 소독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운반
차량과 운반용기의 소독은 청결세탁물을 운반하기 전에 하도록 함
(안 별표1)
- 바. 세탁물 운반차량을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각각 1대 이상 구비하도록
하는 기준을 현실을 반영하여 완화하고,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수집세탁물과 청결세탁물을 동시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청결세탁물 운반 전에는 차량 적재고를 소독하고 이를 소독일지에
기재하도록 함(안 별표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강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근무복(진료행위에 관여하는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에 한한다.),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리넨류

4. “청결세탁물”이란 세탁이 끝난 깨끗하고 사용하지 않은 세탁물을 말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을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감염”을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손위생
2. 개인보호구 착탈의

3. 세탁물 취급 주의사항

4. 소독제 사용 주의사항

5. 세탁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별표 1의 제목 중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을 “세탁물의 수집·보관 및 운반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관”을 “수집·보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세탁물”을 “사용한 세탁물”로,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를 “청결영역과 분리되어야”로 하며, 같은 호 나목(5) 중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를 “오염세탁물”로 하고,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세탁물은 위생적인”을 “세탁물은”으로, “운반하여야”를 “밀폐한 후 운반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청결세탁물은 오염영역과 분리된 위생적인 곳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경우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각각 별도의 용기에 넣어 구분하여야 한다.

다. 처리업자는 수집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청결 세탁물을 운반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결세탁물을 운반하기 전에 운반용기와 운반 차량의 적재고를 소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독일지에 소독일시와 소독약품 사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의료기관 내에서 청결세탁물을 운반할 때에도 소독이 완료된 운

반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운반용기를 덮개로 덮거나 밀폐해야 한다.

별표 4 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갖추어야”를 “갖추고, 소독일지를 비치하여야”로 한다.

가. 차량의 적재고는 밀폐되어 있어야 하며,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나. 차량의 적재고에 수집세탁물과 청결세탁물을 함께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고를 완전히 구획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탁물과 청결 세탁물을 각각의 적재고에 분리하여 적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호 중 “(침구류·의류·리넨류·기타)”를 “(침구류 등·기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호 중 “(침구류·의류·리넨류·기타)”를 “(침구류 등·기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호 중 “침구류·의류·리넨류”를 “침구류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 예방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	/전송
과(팀)	과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시장·군수·구청장

제 목: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년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세탁물의 종류	세탁물 발생량 (kg)	세탁물 처리량(kg)		비 고
		자체 처리량	위탁 처리량	
계				
침 구 류 등				
기 타				

발 신 병원명

원 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시장·군수·구청장

제 목: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년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에 따라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의료기관 종 류	수탁의료 기 관 수	종류별 처리량(kg)			비 고
		계	침구류 등	리넨류	
계	개소				
중 합 병 원					
병 원					
요 양 병 원					
정 신 병 원					
한 방 병 원					
치 과 병 원					
의 원					
한 의 원					
조 산 원					

발 신 업체명(상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 (처리업자용)

소독일 (년월일)	소독시간 (시분)	소독약품 사용량	세탁물 수령 의료기관명	소독책임자 서명	비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 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 (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 ----- ----- ----- -----.		
가. <u>침구류</u> : 이불, 담요, 시트, <u>베개, 베갯잇 등</u>		가. <u>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근 무복(진료행위에 관여하는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 자의 근무복에 한한다.),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 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리넨류</u>		
나. <u>의류</u> : 환자복, 신생아복, <u>수술복, 가운 등</u>		<삭 제>		
다. <u>리넨류</u> : 수술포, 기계포, <u>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 귀, 그 밖의 리넨류</u>		<삭 제>		
라. (생 략)		나. (현행 라목과 같음)		

2.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 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 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3. 바이러스성 출혈열[신증후군 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뎡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한 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 로 오염된 세탁물 4. (생 략)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 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 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 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하 여야 한다.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 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2. · 3. (현행과 같음) 4. “<u>청결세탁물</u>”이란 세탁이 끝 난 깨끗하고 사용하지 않은 세탁물을 말한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에볼라바이 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 리미안콩고열, 남아메리카출 혈열 및 리프트밸리열----- ----- ----- 4. (현행과 같음)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 ----- ----- ----- ----- -----. ① ----- -----
---	--

연 4시간 이상 <u>감염</u>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 ③ (생 략)	----- <u>다음 각호의 내용</u> <u>이 포함된 감염</u> ----- -----. <u>1. 손위생</u> <u>2. 개인보호구 착탈의</u> <u>3. 세탁물 취급 주의사항</u> <u>4. 소독제 사용 주의사항</u> <u>5. 세탁 시설설비의 위생관리</u> ② · ③ (현행과 같음)
---	---